KOSHA GUIDE E - 108 - 2011

# 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동현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승규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## ○ 제·개정 경과

- 2002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2년 12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# ㅇ 관련규격

- IEC 60364-5-56: 건축전기설비(Electrical installation of buildings), 제5부 전기설비의 선정과 시공(Part 5: Selection and erection of electrical equipment), 제56장 안전공급(Chapter 56: Safety service)
- FM Loss Prevention Data Sheets 5-23 Emergency And Standby Power Systems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(계측장치 등의 설치), 제274조(자동 경보장 치의 설치 등), 제275조(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), 제308조(비상전원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 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73조(계측장치 등의 설치), 제274조(자동 경보장치의 설치 등), 제275조(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), 제308조(비상전원)의 규정에 따라 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정전으로 인한 화재·폭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, 비상설비등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 시 적용한다.

###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비상설비"라 함은 화재·폭발 등의 사고예방 및 사고 시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명, 소화펌프, 소방대 리프트, 화재경보시스템, 배연시스템 등을 말한다.
  - (나) "안전공급(Safety service)"이라 함은 사고 시 비상설비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.
  - (다) "화재위험"이라 함은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을 제조·저장·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.
  - (라) "폭발위험"이라 함은 폭발성 물질이나 인화점이 낮은 물질의 제조·저장·취급하는 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.
  - (마) "IT계통"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시 키거나 한 점에서 임피던스접지 시키고, 설비의 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통접지

KOSHA GUIDE

E - 108 - 2011

한 방식을 말한다.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4. 비상설비 및 안전공급 전원설비

#### (1) 비상설비

화재·폭발 등의 사고예방 및 사고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공급이 필요한 비 상설비는 다음과 같다.

- (가) 정전으로 공정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 정상적인 공정중단에 필요한 제어설비 및 냉각펌프 등 이상온도 및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
- (나) 보일러, 오븐 및 노(爐, Furnace)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제어설비
- (다) 화재·폭발 등의 예방에 필요한 소방설비
- (라) 소방 또는 구난 활동을 위한 조명 및 통신설비
- (마) 공정운전을 위한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
- (바)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공조설비 및 배출가스 처리설비
- (사) 기타 안전·보건상 비상전원이 필요한 전기설비 등

#### (2) 안전공급 전원설비

- (가) 화재·폭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설비에 안전공급을 위한 전원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- ① 축전기 설비의 경우 비상설비에 대해 정격전압의 87.5 %까지 1.5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자동충전기가 부착되어야 한다.
  - ② 안전공급을 위한 발전설비는 자동으로 시동되고 부하가 10초 이내에 절체 되어야 하며, 2시간 이상 발전이 가능한 용량으로 한다. 이 경우 기동용 축 전기는 상용전원을 사용한 플로팅 충전방식 외에 발전기를 사용한 충전방 식도 갖추어야 한다.

#### KOSHA GUIDE

E - 108 - 2011

- ③ 자동절체기의 용량은 절체기에 연결된 비상설비의 부하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공장 내에 상용전원과 안전공급을 위한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지 않도록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⑤ 안전공급을 위한 전원설비는 본 건물에서 떨어진 불연재의 건물에 설치하거나 두 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격벽으로 구분된 공간에 설치한다.
- (나) 안전공급을 위한 전원설비는 1선 지락에 의해서 자동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.
- (다) IT계통의 경우에 1선 지락은 표시등 및 경고음으로 나타내는 상시 절연감시장 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라) 안전공급을 위한 전원설비는 정기검사, 시험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, 상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비상시 전원공급 상태에 관한 신호가 울리도록 한다.
- (마) 안전공급 전원설비의 설치장소는 외부의 배기가스, 연기, 증기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.
- (바) 안전공급 전원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허가된 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사) 안전공급 전원설비에 부착된 조명설비는 교환주기를 설정하여 보수함으로써 항상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5. 안전공급 선로

- (1) 안전공급 선로는 타 선로와 독립되도록 설치하여 어떤 계통의 전기고장에도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.
- (2) 안전공급 선로는 내화재료나 별도의 경로 또는 외함에 의해 분리·설치하여야 하며, 다른 계통의 개보수시 안전공급 선로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공급 선로는 내화성이 아닌 경우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안전공급의 선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여서는 아

# KOSHA GUIDE

E - 108 - 2011

니 된다.

- (5) 두 선로에 의해서 비상설비에 안전공급이 될 경우 두 선로가 동시에 고장날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별도의 전원에 선로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6) 하나의 계통에서 공급되는 안전공급 전원은 비상설비 전원공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복수의 안전공급 선로에서 하나의 선로가 고장난 경우 다른 선로에서 모든 비상설비의 기동 및 운전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7) 다른 선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는 안전공급 선로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(8) 안전공급 선로의 개폐장치나 제어장치는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하고, 허가된 자만이 접근하여야 한다.

#### 6. 안전공급 전원의 운전

#### 6.1 병렬운전이 가능한 경우

- (1) 병렬운전이 가능할 경우 역송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) 병렬운전중인 전원의 중성점간에는 순환전류, 특히 제3고조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6.2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

- (1) 안전공급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두 계통간의 병렬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적인 인터록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공급 전원과 타 계통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전원마다 확실하

KOSHA GUIDE E - 108 - 2011

게 단락보호 기능을 부여하고, 고장 시 감전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.